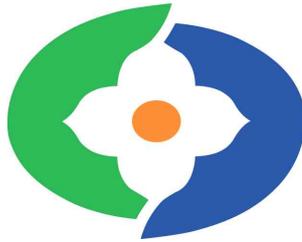


2018년도
학산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기 획 감 사 실)

- 2018년도 학산면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 간 : 2018. 2. 5. ~ 2. 8. (4일간)
- 대상기관 : 학산면
- 감 사 반 : 기획감사실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5. 4월부터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실태
 -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등
 - 인허가 등 민원처리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20건
 - 행정상 조치 : 20건(주의 13, 시정 7)
 - 재정상 조치 : 회수 4건 596,900원, 환급 1건 40,000원
 - 신분상 조치 : 없음

■ 수범사례

- 학산면 소통공간 밴드운영
 -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의 시대 발맞추어 SNS를 이용하여, 각종 정책 및 면 행사를 홍보하고, 주민과의 소통의 장소로 삼기 위해 학산면 소통공간 밴드를 운영 적극행정 추진.

주요 지적사항

과목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합계	총무 9 주민복지 1 민원봉사 3 산업 7	20건	주의 13 시정 7		회수 4건 / 596,900원 환급 1건 / 40,000원
1	총무	◦ 공용차량 이용 직원의 출장명령 절차 미이행	주의		
2		◦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준수	주의		
3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253,120원
4		◦ 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20,000원
5		◦ 향토유적 관리업무 추진 소홀	주의		
6		◦ 이장수당 지급 소홀	주의		
7		◦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주의		
8		◦ 신용카드 사용 소홀	시정		
9		◦ 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보고 소홀	주의		
10	주민복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소홀	주의		
11	민원봉사	◦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소홀	시정		환급 40,000원
12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통지 소홀	주의		
13		◦ 인감증명 위임장 및 발급대장 관리소홀	주의		
14	산업	◦ 소규모사업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39,140원
15		◦ 소규모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인계인수업무 확인 소홀	주의		
16		◦ 2017년 농업인 농기계 공급사업 대상자 선정업무 소홀	주의		
17		◦ 발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업무추진 소홀	시정		회수 284,640원
18		◦ 농지원부 관리 소홀	시정		
19		◦ 이륜자동차사용신고 인지 전자적 소인처리 소홀	주의		
20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처리 소홀	주의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용차량 이용 직원의 출장명령 절차 미 이행

【현 황】

○ 공용차량 이용 직원의 출장명령 절차 미 이행 현황

확인기간	출장횟수	공용차량명	운행자	용무(운행)	비고
2017.8.24. ~ 현재 매주 토요일, 일요일	10회	화물4종일반 *****	○○○	산불감시	
	14회	화물4종일반 *****	★★★	생활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수송	
	1회	화물4종일반 *****	◎◎◎	생활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수송	

※ 출장내역 및 차량운행일지에 따라 재구성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장은 영동군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조(출장의 절차)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직원이 근무지 내 출장을 할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인 면장의 출장명령 허가를 받고 출장을 했어야 하며, 사고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의 명확성을 위해 출장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 2017. 8. 24. ~ 현재까지 ○○○ 등 3명은 각각 산불감시 업무와 생활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수송 업무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사전 출장명령 허가 없이 출장을 실시하는 등 근무상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준수

【현 황】

- 당직근무 시 보안(세콤)장치 개·폐 현황

근무일자	개폐시간		당직근무자		비고
	해제	세트	직급	성명	
2017.05.03.(수)	09:09:37	18:35:12	**☆급	○○○	부처님오신날
2017.06.17.(토)	09:24:31	18:05:40	**☆급	◎◎◎	
2017.09.02.(토)	10:06:14	18:07:17	**☆급	★★★	
2017.10.28.(토)	06:52:54	-	**☆급	□□□	

※ 2017.02.08.~ 현재. 보안(세콤)장치 표본 자료 재구성(삼성 에스원 제공)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는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영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규칙」 제4조 당직의 구분에는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2017. 5. 3.(토) ◎◎☆급 ◎◎◎외 3명은 공휴일 및 토요일 당직근무를 하면서 지각하여 출근하거나 보안(세콤)장치를 설정하지 않고 퇴근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253,12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1. 시간외 근무수당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시간, 원)

직급	성명	단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시간외근무수당 적정 지급내역				차액	비고
			기본	초과	합계	금액	기본	적정 초과시간	합계	금액		
계	6명		70	160	230	2,235,910	70	134	204	1,982,790	253,120	
○○☆급	○○○	10,003	10	30	40	400,120	10	26	36	360,100	40,020	2월분
▼▼☆급	▼▼▼	8,980	10	15	25	224,500	10	11	21	188,580	35,920	
☆☆☆급	☆☆☆	10,003	10	13	23	230,060	10	10	20	200,060	30,000	
□□☆급	□□□	8,980	10	13	23	206,540	10	9	19	170,620	35,920	3월분
○○☆급	○○○	8,980	10	43	53	475,940	10	40	50	449,000	26,940	
◇◇☆급	◇◇◇	10,003	10	20	30	300,090	10	16	26	260,070	40,020	
◆◆☆급	◆◆◆	11,074	10	26	36	398,660	10	22	32	354,360	44,300	4월분

2. 산불 근무시간 미준수 내역

근무일자	직급	성명	휴일 구분	근무 구분	출근시간 (분)	퇴근시간 (분)	미준수시간	적정초과 시간(분)	근무내역
2017-02-11	○○☆급	○○○	휴일	현업	10:05	18:00	5분	240	산불비상근무
2017-02-11	▼▼☆급	▼▼▼	휴일	현업	10:35	18:01	35분	240	산불비상근무
2017-02-19	☆☆☆급	☆☆☆	휴일	현업	11:04	18:00	1시간4분	240	산불비상근무
2017-03-01	□□☆급	□□□	휴일	현업	10:25	18:02	25분	240	산불비상근무
2017-03-11	○○☆급	○○○	휴일	현업	10:37	18:00	37분	240	산불비상근무
2017-03-25	◇◇☆급	◇◇◇	휴일	현업	10:00	17:45	15분	240	산불비상근무
2017-04-15	◆◆☆급	◆◆◆	휴일	현업	10:07	18:00	7분	240	산불비상근무

【위법 부당사항】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개인별, 초과근무일별 초과근무 사전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근무한 자는 근무종료 후 지문인식 등을 통해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산림과에서 2017. 2. 17일 시행한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적용 알림』 공문에 의하면, 읍면에서 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시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0:00~18:00까지 근무를 하면 8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하며,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한시간을 미적용(휴일 및 토요일 4시간 적용)함.
- 학산면에서는 위 [현황 2] 산불 근무 시간 미준수 내역과 같이 ○○○ 외 5명이 휴일 현업 산불 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현황 1]과 같이 과다하게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253,120원을 행정과에 제출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과다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253,120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2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여비 지급 부적정

【현 황】

1. 출장자 여비 과오지급 내역

지급일	여비과목	대상자	지급액(원)	적정 지급액(원)	과오 지급액(원)	비고
계		2명	53,320	33,320	20,000	
'17.03.10	기본경비 (국내여비)	○○○	26,660	16,660	10,000	공용차량 사용 1만원 감액
'17.03.10	기본경비 (국내여비)	□□□	26,660	16,660	10,000	공용차량 사용 1만원 감액

2. 출장내역서

출장일자	공용차량 사용여부	출장자	출장내용	출장지
'17.01.06	사용	○○○	2016년도 ◇◇ ◇◇◇◇ ◇◇◇ ◇◇◇ 교육	청주
'17.01.23	사용	□□□	2017년 ☆,☆,☆☆☆☆ ☆☆☆ ☆☆☆ 교육	청주

【위법부당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및 [별표 2]에 의하면, 근무지 외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함.
- 학산면에서는 위 【현황】 과 같이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을 실시한 경우 일비의 2분의 1일을 감액한 10,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과 □□□에게 각각 1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과다지급한 여비 20,000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향토유적 관리업무 추진 소홀

【현 황】

향토유적명	주 소	지정일	관리자 (소유자)	최종점검	비고
청절사	지내리 500	96.04.15	○○○ (◇◇◇◇◇◇)	2016.9.	
원주김씨 효열문	봉소리 666	97.07.04	☆☆☆ (◎◎◎)	2016.9.	

【위법 부당사항】

-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가치가 있는 유적을 향토유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향토유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15조에 따라 해당 실과에서는 분기 1회 이상, 읍·면에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학산면에서는 지내리 청절사 외 1종의 향토유적에 대하여 2016년 9월 점검 이후 2018년 감사시점까지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향토유적 보호관리를 위한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장수당 지급 소홀

【현 황】

○ 수당지급 지연내역

(단위:천원)

적 요	채 권 자	지급명령 번 호	지급일	지급액	비고
2017년 10월 이장수당 지급	○○○○ 외 26	제416호	2017.10.27.	5,400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실비변상)에 따라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학산면에서는 2017년 10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공무원 보수지급일인 20일에 지급하지 않고 7일이 경과한 시점에 수당을 지급하여 이장수당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구분	집행일자	내 용	금액 (원)	지급 방법	지급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6.06.17	☆☆직 공무원(◆◆◆) 화합대회 지원	50,000	현금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6.06.21	□□□ ◎◎◎◎ 격려품	20,000	계좌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6.06.28	◎◎대회 축하화환	100,000	계좌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6.06.28	■ ■ ■ ◆ ◆ ◆ ◆ 기념	100,000	계좌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6.10.26	◎◎◎◎ ◎◎성금 납부	70,000	현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6.11.15	□□□ ◎◎ 자녀 수능 선물	20,000	계좌	*****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 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으로 정의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제3조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및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음.

- 학산면에서는 직원이 아닌 주민에게 격려품을 지급하거나 전체 직원이 아닌 특정 직원이나 직원자녀 선물 구입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사용 소홀

【현 황】

1. 법인카드 관리 현황

발급일자	카드번호	보관책임자		용도	비고
		직	성명		
16.01.12.	5585-☆☆☆☆-☆☆☆☆-☆☆☆☆	○○○급	□□□	법인일반용	
16.03.23.	5585-◇◇◇◇-◇◇◇◇-◇◇◇◇	○○○급	□□□	법인일반용	

2. 홈페이지 미공개 현황

예산과목	집행일자	사용내역	금액(원)	비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15.12.29	내방객 접대용 음료수 및 차 구입	653,000	카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17.12.22	우리면 직원의 업무추진 격려를 위한 급식결의	540,000	카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16.02.03	2016년도 직원 생일축하등 상품권 구입	600,000	카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17.01.13	2017년도 직원 생일축하등 상품권 구입	600,000	카드

3. 포인트 세입 미조치 현황

카드번호	신용카드회사 (은행)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액 ('18.1.31기준)	현금전환 일자	현금전환금액 (원)	비 고
5585-☆☆☆☆-☆☆☆☆-☆☆☆☆	농협	60,588원	-	-	
5585-◇◇◇◇-◇◇◇◇-◇◇◇◇			-	-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담당자는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실·과장)에게 보고(결재) 하고, 분임재무관(실·과장)은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
- 학산면에서는 위 [현황 2]와 같이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위 [현황 3]과 같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세입조치하지 않는 등 카드 사용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60,588원을 세입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보고 소홀

【이동현황】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발령일자	변경전	변경후	보고여부
재무관	2015.11.01	□□□	○○○	미보고
지출원	2016.07.06	◇◇◇	☆☆☆	학산면-8867(2016.07.11)
지출원	2017.07.20	☆☆☆	○○○	학산면-9743(2017.07.20)
지출보조원	2016.05.03	★★★	■■■	미보고
지출보조원	2016.07.06	■■■	◆◆◆	학산면-8867(2016.07.11)
지출보조원	2016.11.07	◆◆◆	▼▼▼	학산면-13873(2016.11.08)
지출보조원	2018.01.01	▼▼▼	◇◇◇	미보고

【위법부당사항】

- 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 6조에 따라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학산면에서는 인사이동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이 변경되었으나, 위 현황과 같이 2015.11.01.일 재무관 변경, 2016.05.03.일 지출보조원 변경, 2018.01.01.일 지출보조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동보고를 하지 않는 등 회계관계 공무원 이동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소홀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제2항에 의하면 읍·면장은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6항에 의하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2016년도 학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7명(고문 포함)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급 4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신고인	신고일 (지연사유 발생일)	신고내용	부과액	정당 부과액	감경근거	비고
□□□	2016.10.14. (2010.10.04.)	주민등록 신고지연 과태료(재등록)	80	40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5조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제5조
◆◆◆	2017.02.16. (2003.01.21.)	주민등록 신고지연 과태료(재등록)	20	20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5조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5조 일제정리기간중 자진신고(1/2감경)
○○○	2017.02.17. (2017.02.10.)	주민등록 신고지연 과태료(재등록)	12	12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5조	-

【위법부당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지에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제4항에 의거 각각 10

만원,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의견제출기간 및 자진납부 시 20% 범위내에서 감경하여 징수 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경부과 가능하며, 일제정리 기간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그러나 학산면에서는 주민등록 신고지연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잘못 적용하여 □□□의 경우 40,000원을 더 부과하였음.
- 또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각호 규정에 따라 아래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1항 각호 사항

-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그 밖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그러나 학산면에서는 □□□ 외 3건 모두 사전통지 알림 시 감경된 과태료 금액만을 통지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의 경우 감경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과태료 금액 및 감경사유로 인한 감경금액을 알 수 없도록 사전통지를 함.

- 또한 주민등록신고(재등록)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담당팀장 및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

【처분내용】

- □□□에게 잘못 부과한 과태료 40,000원을 대상자에게 환급하여 주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통지 소홀

【현 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내역

연번	성명	생년월일	통지일	통지방법	관련문서
1	□□□	2000.10.18.	2017.11.01.	등기우편	학산면-14161(2017.11.01)
2	○○○	2000.03.17.	2017.04.03.	등기우편	학산면-4735(2017.04.03)

【위법 부당사항】

-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따르면 군수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에 따르면 군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 전출 등으로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공

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하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교부할 때에는 17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통지서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산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해 17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날까지 통지서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통지를 지연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인감증명 위임장 및 발급대장 관리소홀

【현 황】

<인감증명발급대장 미기재 현황>

위임자	사용용도	발급통수	대리인	관계	위임일자	인감증명 발급대장
○○○○	자동차양도	1	□□□	배우자	2016.2.11	미기재
○○○	관공서제출	3	★★★	모친	2016.3.21	미기재
◆◆◆	통신사제출	1	○○○	배우자	2016.5.4	미기재

【위법부당사항】

- 인감증명사무편람에 의하면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받거나 서명이 불가능한 사람이나 신분확인 상의 문제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감증명발급대장(수기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인란에 본인인 경우에는 무인 또는 서명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해야 함.
- 또한 인감증명 발급을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증명청은 위임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제13호서식의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임자 날인, 위임받은 날, 사용용도, 관계, 발급매수 등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한 후 인

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위임장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그런데도 학산면에서는 대리신청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2016년~2017년 기간동안 위임자가 위임한 일자가 누락되었음에도 위임장을 수리하였고,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위임장에 접수인 및 발급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또한 상기와 같이 ○○○○외 2건은 대리인 신청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했음에도 인감증명발급대장 기재를 누락함.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9,14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규모사업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현황】

공 사 명	사업량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감액금액(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	
☆☆(○○○) ◇◇공사	** 28m *** 30m	5,812	★★★★(주) ◎◎◎	16.06.13	16.06.20	16.07.19	171,040	210,180	39,140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21)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비의 세부 산출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별표16”의 기준에 의거 산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16.06.13 ★★★★★(주)와 계약하여 완료된 「☆☆(○○○) ◇◇설치공사」 건에 대하여 준공 시 제출된 보험료 감액동의서는 착공 내역서에 반영된 원가계산 제비율 항목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 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비에 대한 사용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정산하지 않아 39,14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금액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과다지급한 39,14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규모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인계·인수업무 확인 소홀

【현 황】

○ 폐기물처리 증빙자료 미제출 현황

공사명	사업량	도급액 (천원)	도급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비고
계	5건						
◎◎(□□□) ▲▲▲ ○○공사	*** 56m *** 1개소	2,880	㈜◆◆◆◆ ◎◎◎	15.07.24	15.07.28	15.08.24	
★★(☆☆☆☆) ▲▲▲ ○○공사	*** 111m *** 3m	7,282	△△△△(주) ○○○	16.11.16	16.14.18	16.12.14	
◇◇◇◇ ○○○ ○○○공사	*** 56m *** 88m *** 88m	6,575	㈜◎◎◎◎ ▲▲▲	17.05.15	17.05.19	16.06.27	
◆◆ ◎◎◎ ○○공사	*** 5m ** 25m	5,523	▼▼▼▼(주) ◎◎◎	17.09.18	17.09.25	17.10.25	

【위법부당사항】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에서는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립·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에 따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특히 같은 법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서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소량의 경우 간이 인계서를 작성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 하지만, 학산면에서는 2015~2017년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한 「◎◎(□□□)▲▲▲ ○○공사」 외 4건에 대하여 배출자인 도급업체가 건설폐기물 배출 시 관련법령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위·수탁 계약, 특히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적합하게 처리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 및 운송장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는 등 공사 감독 및 업무 담당자로서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2017년 농업인 농기계 공급사업 대상자 선정 업무소홀

【현 황】

사업명	배정량	신청량	심의여부
○○○○○○	2	48	여
◆◆◆◆◆	3	46	부

【위법부당사항】

- 2017년 농업인 농기계 공급사업은 농산물 생산장비 현대화 및 고품질화, 브랜드화를 통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농업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군비 50%(자부담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16년 세부사업별 수요조사 참여 농가에 한해 신청량보다 농기계 배정량이 적을 경우 배점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읍·면 추진위원회(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회에 상정, 공개심의회하여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학산면에서는 2017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심의회를 통해 ○○○○○○는 병행심의회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신청량보다 배정량이 적은 ◆◆◆◆◆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심의

회)를 구성, 심의회 공개심의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284,64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발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업무추진 소홀

【현 황】

○ 받 직불금 부당 지급내역

(단위:㎡, 원)

사업명	신청인명	농지 소재지	지목	직불금 대상면적		지급액
				확인 면적	지급 면적	
	3명	8건				284,640
2015년 발농업직접지불제 사업	○○○	학산면 ◇◇리	종교 용지	1,662	1,662	41,550
2016년 발농업직접지불제 사업	○○○	학산면 ◇◇리	종교 용지	1,662	1,662	66,480
2017년 발농업직접지불제 사업	○○○	학산면 ◇◇리	종교 용지	1,662	1,662	71,730
2015년 발농업직접지불제 사업	□□□	학산면 ☆☆리	대	556	556	13,900
2016년 발농업직접지불제 사업	□□□	학산면 ☆☆리	대	556	556	22,240
2017년 발농업직접지불제 사업	□□□	학산면 ☆☆리	대	556	556	31,990
2016년 발농업직접지불제 사업	★★★	학산면 ◎◎리	창고 용지	442	442	17,680
2017년 발농업직접지불제 사업	★★★	학산면 ◎◎리	창고 용지	442	442	19,070

【위법부당사항】

○ 발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면 발농업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지급 대상자 및 대상농지 적격여부 등을 조사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 2015 ~ 2017년 밭농업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전·답·과수원 지목을 제외한 도로, 하천, 대지, 종교용지 등 지목을 대상으로 항공사진 및 현지확인 조사한 결과,
- 학산면에서는 2015년~2017년 밭농업직불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현황】 에서와 같이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가 농지의 전 면적을 각각 종교용지, 대지, 창고용지로 사용하여 밭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밭직불금 284,64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부당하게 지급한 밭직불금 284,64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농지원부 관리 소홀

【현 황】

1) 농지원부상 농지 지목변경 미조치내역

신청인	농지주소	면적(m ²)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일	농지원부 최종확인일
***	학산면 ☆☆길	660	2016.5.18	2015.10.30
***	학산면 ◆◆길	560	2016.10.20	2016.7.13
***	학산면 ◎◎리	900	2016.11.10	2015.12.16
***	학산면 ☆☆리	660	2017.1.20	2006.3.17
***	학산면 ◎◎리	747	2017.2.2	2016.2.12
***	학산면 ◆◆리	900	2017.7.17	2011.8.9
***	학산면 ☆☆리	660	2017.12.20	2016.8.11
***	학산면 ◎◎리	1445	2017.11.28	2017.3.17
***	학산면 ◆◆리	660	2018.1.23	2016.10.11
***	학산면 ☆☆리	916	2018.1.25	2017.8.16

2) 농지원부상 농업인 등 사망자 미조치내역

연 번	농업인(세대주)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	비고
1	***	☆☆.☆☆.☆☆	학산면 ☆☆길	2016.8.24	
2	***	☆☆.☆☆.☆☆	학산면 ☆☆길	2017.02.02	
3	***	☆☆.☆☆.☆☆	학산면 ☆☆☆길	2017.04.09	
4	***	☆☆.☆☆.☆☆	학산면 ☆☆길	2017.05.29	
5	***	☆☆.☆☆.☆☆	학산면 ☆☆길	2017.06.26	
6	***	☆☆.☆☆.☆☆	학산면 ☆☆☆로	2017.07.10	
7	***	☆☆.☆☆.☆☆	학산면 ☆☆☆길	2017.11.06	
8	***	☆☆.☆☆.☆☆	학산면 ☆☆☆길	2017.11.28	

【위법부당사항】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은 농지의 소유실태와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농지업무 업무지침 제1장.Ⅲ.농지원부관리 2. 농지원부 정비에 따르면 주민행정 시스템 상 사망, 말소된 주민의 농지원부는 수동으로 사본편철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학산면에서는 상기 【현황】 과 같이 농지전용 신고되고 건축물 사용 승인된 필지에 대한 해당부서의 지목변경 통보를 받았음에도 농지원부의 토지를 정비하지 않았고 농지원부상 농가주 ◆◆◆ 외 7명이 2016 ~ 2017년 사이에 사망신고 말소되었음에도 2018. 2. 8일 감사일 현재까지 사망자에 대하여 사본편철하지 않고 있는 등 농지원부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내용】

- 농지원부상 농지 지목변경 및 농업인 등 사망자 미조치 내역을 즉시 정비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륜자동차사용신고 인지 전자적 소인처리 소홀

【현 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현황(붙임내역 참조)

【위법부당사항】

- 인지세법 제8조(납부)에 따라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 10조(소인)의 규정에 의하면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www.e-revenuestamp.or.kr)에 전자 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학산면에서는 학산면 ★★길 ○○ ■■■■ 외 54건에 대하여 전자수입인지를 접수 후 전자적 소인 처리하여 전자수입인지가 “사용” 되었음을 확인했어야하나 전자적소인 처리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접수한 후 신고·수리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 등록현황

신고일	신 청 인		이륜차 현황		
	주 소	성 명	기 종	제 작 년 도	배기량 (cc)
2015.04.09.	학산면 ○○길	***	BEAVER125	2010	124
2015.04.20.	학산면 ○○로	***	SJ50(MAJOR)	2005	49.5
2015.05.26.	학산면 ○○○길	***	9ST50MC9EHN24	2010	49
2015.06.05.	학산면 ○○○○로	***	HJ100T-7C	2015	102
2015.06.08.	학산면 ○○○길	***	CITI 100G	2012	97.1
2015.06.09.	학산면 ○○길	***	MW110WH	2015	108
2015.06.10.	학산면 ○○길	***	BEAVER125	2015	124
2015.06.17.	학산면 ○○길	***	CA110V	2010	108
2015.07.08.	학산면 ○○로	***	JAEIL	2000	49
2015.08.21.	학산면 ○○길	***	DIO 125	2015	124
2015.08.28.	학산면 ○○○길	***	DIO 125	2016	124
2015.09.03.	학산면 ○○○길	***	MXER125	2016	124
2015.09.03.	학산면 ○○○길	***	CA110V	2016	108
2015.09.04.	학산면 ○○길	***	SV125B	2015	124.1
2015.09.08.	학산면 ○○길	***	CA110	2008	108
2015.09.09.	학산면 ○○○길	***	HJ100T-7C	2015	102
2016.02.18.	학산면 ○○길	***	HJ100T-7C	2013	102
2016.03.08.	학산면 ○○○길	***	NC125	2015	124.6
2016.04.11.	학산면 ○○○○길	***	CA110B	2016	108
2016.04.22.	학산면 ○○○길	***	HJ100T-7C	2013	102
2016.05.12.	학산면 ○○길	***	JOYMAX125EFI	2016	124
2016.05.13.	학산면 ○○○길	***	EXIV	2007	124.5
2016.05.25.	학산면 ○○○길	***	NEW TEE	2015	49.5
2016.06.03.	학산면 ○○○길	***	NEW TEE	2015	49.5
2016.06.28.	학산면 ○○○길	***	BIZJET100	2016	97
2016.06.28.	학산면 ○○○○로	***	MINIJET PLUS	2017	97
2016.06.29.	학산면 ○○길	***	PRIMA RALLY(SF50R)	2006	49
2016.07.11.	학산면 ○○길	***	MINIJET PLUS	2017	97
2016.08.10.	학산면 ○○○길	***	MINIJET PLUS	2017	97
2016.08.29.	학산면 ○○○○길	***	HJ100T-7C	2016	102
2016.09.05.	학산면 ○○길	***	NEW TEE	2012	49
2016.09.20.	학산면 ○○길	***	DD110	2016	108.2
2016.10.04.	학산면 ○○길	***	HJ125T-16	2008	124
2016.11.28.	학산면 ○○길	***	YAMAHA VINO50	2001	49

신고일	신청인		이륜차 현황		
	주소	성명	기종	제작년도	배기량(cc)
2017.02.15.	학산면 ○○○○길	***	CA110B	2017	108
2017.03.03.	학산면 ○○○길	***	CA110	2005	108.9
2017.03.08.	학산면 ○○길	***	GTS300 EVO	2014	263
2017.03.14.	학산면 ○○○길	***	GZ50G (MESSAGE)	2001	49
2017.03.17.	학산면 ○○○길	***	BEAVER125	2015	124
2017.03.28.	학산면 ○○길	***	DD110	2017	108.2
2017.03.30.	학산면 ○○○○길	***	KR 110B	2008	110
2017.04.04.	충남 ○○시 ○○면	***	CA110	2005	108.9
2017.04.12.	학산면 ○○○길	***	BIZJET100	2016	97
2017.04.19.	학산면 ○○길	***	MINIJET PLUS	2017	97
2017.05.23.	학산면 ○○○○길	***	HJ100T-7C	2015	102
2017.06.15.	학산면 ○○길	***	SS101(미오)	2009	101
2017.06.22.	학산면 ○○○길	***	MINIJET PLUS	2018	97
2017.07.26.	학산면 ○○○길	***	CA110B	2014	108
2017.08.09.	학산면 ○○길	***	NSS300A	2017	279
2017.08.31.	학산면 ○○○○길	***	SU125V	2008	124
2017.09.14.	학산면 ○○○길	***	CA110B	2017	108
2017.09.28.	영동읍 ○○○○길	***	CA110E	2007	108.9
2017.10.17.	학산면 ○○길	***	SH100	2006	99.7
2017.11.13.	학산면 ○○길	***	HJ125T-19	2017	124
2017.12.04.	학산면 ○○○○로	***	CA110V	2014	108

【 일련번호 : 2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처리 소홀

【현 황】

○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미비현황

신고일	신 청 인		차 량 번 호	비 고
	주 소	성 명		
2015.04.09.	학산면 ☆☆☆길	***	충북영동 자○○○○○	구비서류 미비(사용폐지증명서)
2015.06.05.	학산면 ☆☆☆☆로	***	충북영동 자○○○○○	양수인 미기재(이륜자동차 제작증)
2015.06.09.	학산면 ☆☆☆길	***	충북영동 자○○○○○	양수인 미기재(이륜자동차 제작증)
2015.08.21.	학산면 ☆☆☆길	***	충북영동 자○○○○○	양수인 미기재(이륜자동차 제작증)
2015.08.28.	학산면 ☆☆☆길	***	충북영동 자○○○○○	양수인 미기재(이륜자동차 제작증)
2015.09.03.	학산면 ☆☆☆길	***	충북영동 자○○○○○	이륜자동차제작증 원본이 아닌 사본첨부
2015.09.04.	학산면 ☆☆☆길	***	충북영동 자○○○○○	이륜자동차제작증 원본이 아닌 사본첨부
2015.09.09.	학산면 ☆☆☆길	***	충북영동 자○○○○○	양수인 미기재(이륜자동차 제작증)
2016.03.08.	학산면 ☆☆☆길	***	충북영동 자○○○○○	이륜자동차제작증 원본이 아닌 사본첨부
2016.04.11.	학산면 ☆☆☆길	***	충북영동 자○○○○○	양수인 미기재(이륜자동차 제작증)
2016.05.12.	학산면 ☆☆☆길	***	충북영동 자○○○○○	양수인 미기재(이륜자동차 제작증)
2016.5.25	학산면 ☆☆☆길	***	충북영동 자○○○○○	양수인 미기재(이륜자동차 제작증)
2016.06.28.	학산면 ☆☆☆길	***	충북영동 자○○○○○	양수인 미기재(이륜자동차 제작증)
2016.06.28	학산면 ☆☆☆☆로	***	충북영동 자○○○○○	양수인 미기재(이륜자동차 제작증)
2016.06.29	학산면 ☆☆☆길	***	충북영동 자○○○○○	구비서류 일체없음.
2016.08.10.	학산면 ☆☆☆길	***	충북영동 자○○○○○	양수인 미기재(이륜자동차 제작증)
2016.09.07.	학산면 ☆☆☆로	***	충북영동 자○○○○○	구비서류 일체없음.
2017.04.12	학산면 ☆☆☆리 ☆☆☆길	***	충북영동 자○○○○○	양수인 미기재(이륜자동차 제작증)
2017.08.09.	학산면 ☆☆☆길	***	충북영동 자○○○○○	양수인 미기재(이륜자동차 제작증)
2017.09.14.	학산면 ☆☆☆길	***	충북영동 자○○○○○	양수인 미기재(이륜자동차 제작증)

【위법부당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구비할 서류의 종류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63조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학산면에서는 【현황】에서와 같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필요한 법적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용신고를 하는 등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